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4. 12.
총무재무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3. 24.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 1994. 4. 1
- 다. 상정 일자 : 제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4. 4. 12.)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최 영 명)

- 가.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 및 사업소세 등에 대하여 마포구 구세의 과세물 면제하여 공공사업을 촉진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안, 제2조 제5호)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 건재)

- 동 조례안은 지방 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등에 부과하는 구세를 면제하여 공공사업을 촉진코자하는 것임.
-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조 및 제9 조 등에 근거한 개정으로 특이 사항은 없음.

4. 질 의 및 답 변 요 지

- 질문(윤동원 위원) : 도시 철도 공사가 제2기 지하철 공사를 말하는 것인가?
- 답변(최영명 세무1과장) : 그렇습니다.
- 질문(김유현 의원) : 마포구 관내에도 해당되는 토지, 건물이 있는가?
- 답변(최영명 세무1과장) : 앞으로 제2기 지하철이 완공되면 있을 것입니다.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5
----------	-----

제출년월일 : 1994. 3. 24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 및 사업소세 등에 대하여 마포구 구세의 과세물 면제하여 공공사업을 촉진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안 제2조 제5호)

3. 개정근거

○ 지방세법(1994·1·7 법률 제4720호)

제2조, 제3조 및 제9조

4. 개정조례(안) : 별 첨

5. 예산조치 필요성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
에관한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일 현재 납세의무자 성립한 것으로 보
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과세면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 하여 설립된 다음 각호의 지방공사 및 공 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 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 하고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 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분 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 비율에 해 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12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 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2조(과세면제) (현행과 같음)</p>
<p>1.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2.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3.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신 설)</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u>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u></p>